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20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최민희 · 김우영 · 김 현
박민규 · 이훈기 · 채현일
최혁진 · 허성무 · 황정아
이원택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펀드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펀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활성화”를 “활성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18조(창업의 <u>활성화</u>) ① ·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18조(창업의 <u>활성화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 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 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④ <u>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의 출자금</u> <u>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 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 의 출자금</u> <u>3. 그 밖의 부대수입</u>

<u><신 설></u>	<u>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 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